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5. 9. .
발 의 자	김근아 의원 외 9명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근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 연월일 2015. 9. .
발 의 자 김근아, 강승수, 권기만,
손홍섭, 안주찬, 양진오,
정하영, 허 복, 김상조,
안장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가.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공동운명체로서의 시민화합을 이뤄 선진 구미시 만들기에 이바지 하고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라. 바르게살기운동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마.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
4.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사업 지원
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